

보험금 청구권자	성명	김 인 화	<input type="checkbox"/> 계약자 <input type="checkbox"/> 피보험자 <input type="checkbox"/> 수의자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()
보험회사	NH농협손해보험		
분쟁대상	상품명 무)NH가성비굿건강보험 외 1건 증권번호 3190829754851 외 1 건		계약일자 2021.03.24
보험계약	계약자 김인화	피보험자 김인화	수의자 김인화
분쟁내용	[보험금 청구권자의 주장] 예시) 피보험자는 해당보험 가입 후 2024.04.12. 발생한 사고로 서울바른병원에서 신경차단술 치료 후 2025.03.13. 누가재 활의학과의원에서 '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약간의 신경장애(지급률 10%)'로 진단 받고 후유장해진단비 2,000,000원 보험금을 청구하였습니다. 보험회사의 의료자문이나 제3의료기관 판정 등을 거부합니다.		
	[보험회사의 주장]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. 제3자는 의료법 제3조(의료기관)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,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.		
화해내용	[양보하는 내용] 예시) 상기 분쟁내용에 대해 양 당사자는 원만하게 화해하기 위해 보험회사는 보험금청구권자에게 일반상해후유장해보험금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약간의 신경장애(지급률 2%) 400,000원(금 40만원)을 지급합니다.		

보험금청구권자는 상기 화해내용에 본인이 동의하였음을 확인합니다.

※화해계약서에 서명한 후 화해내용에 관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.

25년 4월 6일
김인화 (서명)
(서명불가인)

은행명: 신한은행

계좌번호 : 110-490739060

예금주 : 김인화

보험금청구권자

[보험금청구권자가 화해계약 주요내용 등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다는 사실 확인]

- ① 보험금청구권자는 NH농협손해보험으로부터 화해의 정의, 화해계약의 효력, 분쟁 및 화해내용, 화해계약 이행기간에 대해 충분히 설명 받았습니까? 예 아니요
- ② 본 합의는 보험금청구권자의 진정한 의사표시로서 착오나 이해관계자의 사기 또는 강박 등이 없이 평온한 상태에서 이루어졌습니까? 예 아니요
- ③ 보험금청구권자에게 불공정하게 적용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문구가 포함되었는지 확인 바랍니다.
 - 약관상 "부지급사유를 인정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문구"가 포함되어 있습니까? 예 아니요
 - "소송 등 일체의 권리행사를 제한하는 문구"가 포함되어 있습니까? 예 아니요
 - "장래 보험금 청구를 금지시키는 문구"가 포함되어 있습니까? 예 아니요

화해 계약서

[화해의 정의] 화해란 당사자가 상호 양보하여 분쟁을 종료할 것을 약정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.

[화해계약 효력] 화해계약 체결시 화해 전 권리와 소멸되고 화해내용에 따라 새로운 법률관계가 발생됩니다. 또한 화해계약은 의사표시에 착오가 있더라도 화해계약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. 단, 화해당사자의 자격 또는 분쟁 이외의 사항 (분쟁의 전제가 되거나 기초가 되는 사실 등)에 대하여 착오가 있는 때에는 화해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

[화해계약 이행기간] 본 화해계약은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화해계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행합니다. 보험회사가 동 이행기한 내에 화해계약 체결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행기일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지급일까지 보험계약 대출이율 등으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합니다.